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119항공대 소속 항공조종사 충원을 위한 채용시험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항공조종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채용률을 개선하고,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조종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개선(안 제23조)

- 1)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(자격증 취득 시점 불필요)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비
- 2)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지속 감소(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채용 인원은 30% 수준)
- 3) 군(軍) 항공조종사는 자격증명 없이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제대를 앞두고 자격증명을 취득, 실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비행경력이 있음에도 자격증 소지 후 근무경력(2년)을 요구하는 현행 규정 미충족

나.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성적표 제출 시기 마련(안 제28조)

- 1)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신원진술서는 임용을 위한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 개선
- 2) 한국사 시험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성적표 제출 시기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같게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항공분야 조종사는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할 수 있다.

제23조제7항 본문 중 “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43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”을 “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25조 중 “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”을 “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5.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각 1통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영 제1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② ~ ⑥ (생략) ⑦ <u>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. 다만,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다.</u> ⑧ ~ ⑩ (생략)	제23조(응시자격등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항공분야 조종사는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할 수 있다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영 제43조제3항에 따른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----- 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)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.

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,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
2. 삭 제
3. (생 략)
4. 삭 제
5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(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) 1통
6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25조(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) 「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-----

제28조(응시서류의 제출등) ① --

-----.

<삭 제>

3. (현행과 같음)
5.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각 1통
6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,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·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(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)

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⑤ -----

--- 각 호-----

-----.

제30조(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)

영 제17조에 따른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